

의안번호	2218687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6.26.
추계번호	26B240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 <u>법정최소부담금</u>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사용자는 법정최소부담금과 실제 납입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제8항 신설)	의무규정
3	안 제23조의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u>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u> 으로서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u>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여야 한다.</u> (제2항)	의무규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속하는 자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담보권 설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제3항 신설) 1. 해당 기금의 급여 지급 2.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규정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자산을 다른 회계로 전용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항 신설)	의무규정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준용한다.(제5항 신설)	의무규정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회계 및 재산운용 현황을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제6항 신설)	의무규정
4	안 제23조의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항 신설)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4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 3. 제20조제8항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제3호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조(정의)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참조
2	안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 법정최소부담금,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퇴직연금 납입 명세서를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안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고유자산과 구분되는 독립된 자산으로서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	• 미대상 －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사용자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조력하거나 모집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개정안의 시행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나,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48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 재정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상시 3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고용노동부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²⁾를 추진하고 있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임
 - － (사업대상) 2026년 6월 기준 30인 이하 사업장,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
 - * 2026년 7월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2027년 1월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

2) 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의 내역사업

- (사업방법)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기금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사업
- (지원내용)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 사업장 1개소당 최대 30명, 최대 3년, 수수료 면제
- (시행경과) 2022년 4월 도입, 2022년 9월 사업주 재정지원 실시, 2024년 1월 근로자 재정지원 실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다음의 사유로 추가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 첫째,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³⁾는 국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⁴⁾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지원수준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⁶⁾과 지원수

3)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15(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30호(2026.1.1. 시행)

6)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81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준7) 및 지원기간8)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이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요건과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
- 둘째,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300명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기가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유무에 따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여부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한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종사자 규모에 비례하여 2024년 기준 종사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3.3%이며, 종사자 수가 30~49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률은 74.2%이고, 50~99인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82.2%임
 - 개정안이 시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가입된 퇴직연금 제도의 유무나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여부 및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로의 이동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이로 인한 행태변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7)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부담금 및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각각 28만1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표 1] 종사자규모별 사업장 도입 현황

(단위: 천 개소, %, %p)

구분	2023년					2024년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 사업장			도입률 (B/A)	도입 대상 사업장(A)	도입 사업장			도입률 (B/A)
		전체 (D=B+C)	도입 대상(B)	도입 대상외(C)			전체 (D=B+C)	도입 대상(B)	도입 대상외(C)	
5인 미만	900	98	94	4	10.4	924	102	98	4	10.6
5~9인	397	130	128	2	32.3	394	130	129	2	32.7
10~29인	236	135	134	1	56.8	234	135	134	1	57.3
30~49인	41	30	30	0	73.5	42	31	31	0	74.2
50~99인	30	24	24	0	81.3	30	25	25	0	82.2
100~299인	15	14	13	0	87.6	15	14	14	0	88.7
300인 이상	6	5	5	0	91.7	6	5	5	0	92.1

주: 도입 대상 외 : 가입 대상 근로자(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자료: 통계청,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5.12.1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